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4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건태

이학영 · 황명선 · 박 정

이개호 • 전재수 • 신정훈

김동아 • 박균택 • 박수현

박상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6항 중 "제22조의5제2항"을 "제2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이하 "임시조치"라 한다)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5 중 "제22조의5제2항"을 "제22조의5제3항"으로 한

다.

제95조의2제1호의3 본문 및 단서 중 "제22조의5제2항"을 각각 "제2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96조제6호의2 중 "제22조의5제3항"을 "제22조의5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의5제2항"을 "제22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중 "제22조의5제4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제2호의3부터 제2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22조의5제5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2의2.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
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	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	6
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u>제22조의5제</u>	제22조의5제3
<u>2항</u> 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	<u> </u>
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 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 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u>제1항</u> 또는 <u>제2항</u>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

<u>정보에 대한 접</u>
근을 임시적으로 차단(이하
"임시조치"라 한다)하고 수사기
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
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종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
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u>야 한다.</u>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⑥</u>
<u>제2항</u> <u>제</u>
3항

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 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 를 준용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 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폐업을명하여야한다.

3의5. <u>제22조의5제2항</u>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
<u>.</u>
<u>⑦</u>
- <u>제5항</u>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u>제22조의5제3항</u>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략)
 -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 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 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5. (생략)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 략)
 -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95조의2(벌칙)
<u>.</u>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22조의5제3항</u>
<u>제22조의5제3</u>
<u>항</u>
제22조의5제3항
<u>,</u>
2. ~ 5. (현행과 같음)
96조(벌칙)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제22조의5제4항</u>

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 ·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 12.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3. <u>제22조의5제2항</u>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 7. (생략)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1의2. <u>제22조의5제4항</u>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의3. ~ 3. (생 략)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 <u>제3항</u>	
7. ~ 12.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22조의5제3항</u>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의3.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u><신 설></u>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u>제2</u> 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 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2의4. (생 략)

3. ~ 17. (생 략) ⑥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u> 2의3.</u> <u>제2</u>
<u>2조의5제6항</u>
<u>2의4.</u> · <u>2의5.</u> (현행 제2호의3
및 제2호의4와 같음)
3.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